

PATENT ASSIGNMENT COVER SHEET

Electronic Version v1.1
 Stylesheet Version v1.2

EPAS ID: PAT723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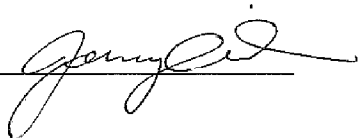
SUBMISSION TYPE:	NEW ASSIGNMENT	
NATURE OF CONVEYANCE:	CHANGE OF NAME	
CONVEYING PARTY DATA		
	Name	Execution Date
	SHINE BIOPHARMA, INC.	04/09/2019
RECEIVING PARTY DATA		
Name:	GENUV INC.	
Street Address:	5F, 14, CHEONGGYECHEON-RO, JUNG-GU	
City:	SEOUL	
State/Country:	KOREA, REPUBLIC OF	
Postal Code:	04520	
PROPERTY NUMBERS Total: 1		
	Property Type	Number
	Application Number:	17463219
CORRESPONDENCE DATA		
Fax Number:	(650)938-5200	
<i>Correspondence will be sent to the e-mail address first; if that is unsuccessful, it will be sent using a fax number, if provided; if that is unsuccessful, it will be sent via US Mail.</i>		
Phone:	6503357908	
Email:	mnascimento@fenwick.com	
Correspondent Name:	HAYAN YOON	
Address Line 1:	FENWICK & WEST LLP	
Address Line 2:	801 CALIFORNIA STREET	
Address Line 4:	MOUNTAIN VIEW, CALIFORNIA 94041	
ATTORNEY DOCKET NUMBER:	34688-49544/US (6 OF 6)	
NAME OF SUBMITTER:	HAYAN YOON, REG. NO. 78,318	
SIGNATURE:	/Hayan Yoon/	
DATE SIGNED:	03/18/2022	
Total Attachments: 14		
source=34688-49544 US 6 of 6 Assignment (Shine to Genuv) from parent 43721#page1.tif		
source=34688-49544 US 6 of 6 Assignment (Shine to Genuv) from parent 43721#page2.tif		
source=34688-49544 US 6 of 6 Assignment (Shine to Genuv) from parent 43721#page3.tif		
source=34688-49544 US 6 of 6 Assignment (Shine to Genuv) from parent 43721#page4.tif		
source=34688-49544 US 6 of 6 Assignment (Shine to Genuv) from parent 43721#page5.tif		

source=34688-49544 US 6 of 6 Assignment (Shine to Genuv) from parent 43721#page6.tif
source=34688-49544 US 6 of 6 Assignment (Shine to Genuv) from parent 43721#page7.tif
source=34688-49544 US 6 of 6 Assignment (Shine to Genuv) from parent 43721#page8.tif
source=34688-49544 US 6 of 6 Assignment (Shine to Genuv) from parent 43721#page9.tif
source=34688-49544 US 6 of 6 Assignment (Shine to Genuv) from parent 43721#page10.tif
source=34688-49544 US 6 of 6 Assignment (Shine to Genuv) from parent 43721#page11.tif
source=34688-49544 US 6 of 6 Assignment (Shine to Genuv) from parent 43721#page12.tif
source=34688-49544 US 6 of 6 Assignment (Shine to Genuv) from parent 43721#page13.tif
source=34688-49544 US 6 of 6 Assignment (Shine to Genuv) from parent 43721#page14.tif

Certificate of Translation

Date: July 19, 2021

I, Jenny Choib, am competent to translate from Korean into English, and certify that th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titled "Certificate of All Matters of Corporate Register (Including Erased Matters)" is true and accurate to the best of my abilities.

Signature: 

Dated: July 19, 2021

Jenny Choib

Name of Translator

Geonggido Gwangju Tanbeolgil 157-16 KOREA

Address of Translator

[Excerpt Translation]

Certificate of All Matters of Corporate Register (Including Erased Matters)

Registry No.	600016	
Registration No.	110111-6000163	
Corporate name	Shine-Biopharma Inc. (Shine-Bio Inc.)	
	Shine-Biopharma Inc.	Amended on Sep. 23, 2016
		Registered on Sep. 23, 2016
	GENUV Inc. (GENUV Inc.)	Amended on Mar. 29, 2019
		Registered on Apr. 9, 2019
Head Office	43 Banpo-daero-28-gil, Seocho-gu, Seoul (Seocho-dong)	
	902ho, 507 Gangnam-daero, Seocho-gu, Seoul (Banpo-dong, Shintaeyang Bldg.)	Amended on Sep. 23, 2016
		Registered on Sep. 23, 2016
	14 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Mugyo-dong, NIA)	Amended on Oct. 12, 2018
		Registered on Oct. 26, 2018
Method of public notice	Notice is to be posted on the daily newspaper "Korea Economic Daily" published in Seoul	
Par value per share	500 won	
Total number of shares to be issued	10,000,000 shares	

[Translation of the remaining contents has been omitted]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600016	
등록번호	110111-6000163	
상 호	주식회사 샤인바이오 (Shine Bio Inc.)	
	주식회사 샤인바이오	2016.09.23 변경 2016.09.23 등기
	주식회사 지뉴브 (GENIV Inc.)	2019.03.29 변경 2019.04.09 등기
본 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8길 43(서초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07, 902호(반포동, 선태양빌딩)	2016.09.23 변경 2016.09.23 등기
	서울특별시 중구 정계천로 14(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10.12 변경 2018.10.26 등기
공고방법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주의 금액	금 5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0 주	
보통주식	1,0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55,555 주	
보통주식	1,000,000 주	2017.03.04 변경 2017.03.06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55,555 주	
발행주식의 총수	1,222,223 주	
보통주식	1,000,000 주	2017.03.22 변경 2017.03.22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222,223 주	
발행주식의 총수	1,264,777 주	
보통주식	1,042,554 주	2017.10.18 변경 2017.10.19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222,223 주	
발행주식의 총수	1,290,577 주	
보통주식	1,068,354 주	2017.12.06 변경 2017.12.13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222,223 주	
발행주식의 총수	1,494,827 주	
보통주식	1,068,354 주	2019.02.26 변경 2019.03.04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426,473 주	

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3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급확인번호 0106-ALRF-XZJC

13404191523110501241099210062110080015810101101151 3 발행일: 2019/04/15

- 1/12 -



등록번호	600016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록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1,603,766 주		2019.03.16 변경
보통주식	1,068,354 주		2019.03.27 동기
전환상환우선주식	535,406 주	금 801,880,000 원	

목 적

1. 의약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의료기기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조직 대체재료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유전자 관련 연구개발사업
1. 동식물성 세포배양에 의한 생리활성물질 개발, 생산 및 판매
1. 의약품 관련 기술개발사업 매매 및 중개업
1. 진단시약 제조 및 수입 판매업
1. 의약품 도매업 및 제조업
1. 의약품 가공 위탁업
1. 연구실험용 기자재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외부용역 연구수행 사업
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수입업 및 판매업
1. 해외투자사업
1. 경영 및 영업마케팅 관련 컨설팅업
1. 부동산업(부동산매매, 임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수입물품 판매업
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한성호 700513-*****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31, 에이동 1203호(정동, 정동상립원)

사내이사 한성호 700513-*****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31, 에이동 505호(정동, 정동상립원)
2016 년 11 월 07 일 주소변경 2016 년 11 월 11 일 동기

사내이사 한성호 700513-*****
2017 년 07 월 10 일 주소삭제 2017 년 07 월 20 일 동기
2019 년 03 월 29 일 중임 2019 년 04 월 09 일 동기

감사 오스트레일리아국인 리송알렉스인근 1965년 8월 17일생

2016 년 09 월 23 일 사임 2016 년 09 월 23 일 동기

사외이사 송영철 570601-*****

2017 년 07 월 10 일 취임 2017 년 07 월 20 일 동기

사외이사 송영철 570601-*****

2017 년 08 월 02 일 성명 변경 2017 년 08 월 02 일 동기

2018 년 07 월 26 일 사임 2018 년 08 월 14 일 동기

사외이사 주광환 780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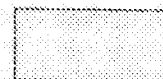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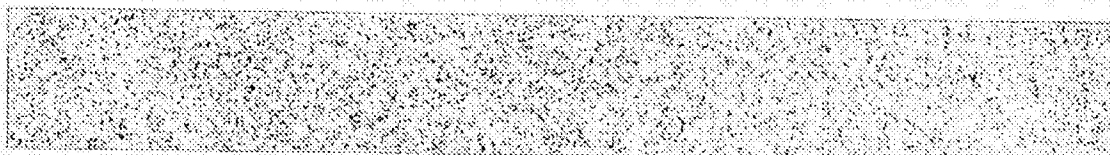
2017 년 07 월 10 일 취임 2017 년 07 월 20 일 동기

대표이사 한성호 700513-*****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31, 에이동 505호(정동, 정동상립원)

발급확인번호 0166-AJRF-XZJC

13404101523119501241009210062110008016M101BU0LIS1 3 발행일 2019/04/15

- 2/12 -



등기번호	600016
2017년 07월 10일 취입	2017년 07월 20일 등기
대표이사 한성호 7005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석산로24길 34(선촌동)	
2017년 09월 28일 주소변경	2017년 10월 11일 등기
대표이사 한성호 700513-*****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31, 에이동 505호(정동, 정동상업원)	
2017년 10월 31일 주소변경	2017년 11월 07일 등기
대표이사 한성호 700513-*****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31, 에이동 205호(정동, 정동상업원)	
2018년 12월 10일 주소변경	2018년 12월 11일 등기
2019년 03월 29일 증인	2019년 04월 09일 등기
사외이사 일본국인 하지메오토 1950년 5월 21일생	
2018년 08월 08일 취입	2018년 08월 14일 등기
사내이사 박홍록 681023-*****	
2019년 03월 29일 취입	2019년 04월 09일 등기
감사 이건원 701222-*****	
2019년 03월 29일 취입	2019년 04월 09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전환상환우선주식

1. 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은 참가자, 누적적 우선주요, 인수인은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게 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주식배당의 경우 인수인의 요청에 따라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과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을 배당한다.

2. 잔여 재산 분배 권리에 대한 사항

회사가 청산될 때 인수인은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본건 전환상환우선주 인수금액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은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단,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4.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인수인은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전환비율

1. 원칙적으로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1340419152311050124100921006211030901631019130151 3 발행일: 2019/04/15

발급확인번호 0166-ALRF-XZJC

- 3/12 -

PATENT

REEL: 059914 FRAME: 0523

등기번호

600016

2. 회사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인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거나 (i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v)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1주당 취득가격(아래 조정사유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격 포함)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이하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다.

3. 제2호에 의한 동의여부를 불분하고 회사가 인수인이 전환정구를 하기 전에 인수인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다만, 회사의 기승인 또는 기발행된 전환사채, 우리스주조합에 의한 신주인수, 또는 회사의 정관이 정한 한도 내에서 부여 예정인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인수인의 1주당 취득가격) / (인수인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4. 회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또는 인수인이 인정하는 해외 공개시장에 상장(이하 통칭하여 "기업공개"라 한다)함에 있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이 회사 기업공개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전환가격을 기업공개 공모단가의 70%로 조정한다.

5. 인수인의 1주당 취득가격은 (본건 전환상환우선주 인수금액 총액) /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총수)로 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7.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도록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8.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상환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 상환기간: 인수인은 회사가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업공개 되지 못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일정 및 비율에 따라,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단, 본 호에서 정한 기업공개에는 제16조 2 4호에 정의한 코넥스시장 상장은 제외한다.

최초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100%

2. 상환방법: 인수인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상환

3. 주당 상환가액: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1주당 취득가격과 동일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전환상환

발급관리번호 0166-3LRF-XZJC

1240419152311050124100921006211000B076N101B1J0L1S1 3 발행일: 2019/04/15

- 4/12 -

PATENT

REEL: 059914 FRAME: 0524

등기번호

600016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② 인수인은 상환기간 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의 상환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인수인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인에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일(1)주당 취득가격과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주당 상환가액으로 현금상환 하되,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1. 주급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0조의 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는 경우
4. 회사가 우선주인수계약서 제21조에 의한 보고의무, 협의절차, 동의절차 준수 의무 및 제22조에 의한 자료제출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인수인의 투자 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5. 우선주인수계약서 제3조 2항, 제4조, 제5조, 제19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4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는 경우
6.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7. 회사의 주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8. 청산, 파산, 법정관리, 회계 또는 부실정후기업으로의 인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9. 회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 년 03 월 04 일 설정

2017 년 03 월 06 일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1. 우선주의 내용

①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관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3조 내지 제18조를 따른다

②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은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단,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6조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②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에 손해를 미치게 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발급확인번호 0166-ALRV-XZJC

1340419152311050124100921006211000B0T6M101B1J0L1S1 3 발행일: 2019/04/15

- 5/12 -

PATENT

REEL: 059914 FRAME: 0525

등기번호

600016

한다.

3. 배당금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액면가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게 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주식배당의 경우 “인수인”의 요청에 따라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과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을 배당한다.

② 위 ①항과 관련, “회사”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또는 “인수인”이 인정하는 해외시장에 상장(M&A 등을 통한 우회상장을 포함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 시장에서의 상장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하 통칭하여 “기업공개”라 한다)함에 있어, “회사”의 배당금 지급사실이 동 “회사”의 “기업공개” 절차상 최초 공모가격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궁극적으로 “인수인”의 이익에 반한다고 “인수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4. 청산(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회사”가 청산될 때 “인수인”은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1조 제2항의 인수금액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5.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인수인”은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가. 전환비율

(1) 원칙적으로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2) “회사”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인”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거나 (i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v)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1주당 취득가격(아래 조정사유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격 포함)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이하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다.

(3) 위(2)에 의한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가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인수인”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다만, “회사”의 기승인 또는 기발행된 전환사채, 우리사주조합에 의한 신주인수, 또는 “회사”의 정관이 정한 한도 내에서 부여 예정인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인수인”의 1주당 취득가격) / { “인수인”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

(4) “회사”가 기업공개 또는 M&A를 함에 있어, “회사” 기업공개 공모단가 또는 M&A 인수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격을 기업공개

등록번호

600016

공모단가 또는 인수단가의 70%로 조정한다.

(5) "인수인"의 일(1)주당 취득가격은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1조 제2항의 인수금액 총액) /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총수)로 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7)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도록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8) "회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알츠하이머 ESFA 임상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전환가격을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1주당 취득가격(위의 조정사유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격 포함)의 80%로 조정한다.

3.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6. 상환에 관한 사항

① "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 따라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자금을 "인수인"이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 상환기간: "인수인"은 "회사"가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업공개"되지 못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일정 및 비율에 따라,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최초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100%

(2) 상환방법: "인수인"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상환

(3) 주당 상환가액: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일(1)주당 취득가격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② "인수인"은 위 제1에서 정한 상환기간 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의 상환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인수인"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인"에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일(1)주당 취득가격과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주당 상환가액으로 현금상환 하되,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1)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13104191523110501241000210002110008076M101B1J0L1S1 3 발행일: 2019/04/15

발급확인번호: 0166-ALRF-XZJC

- 7/12 -

PATENT

REEL: 059914 FRAME: 0527

등기번호

600016

- (2)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0조의 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는 경우
 - (4) "회사"가 우선주인수계약서 제21조에 의한 보고의무, 협의절차, 동의절차 준수의무 및 우선주인수계약서 제22조에 의한 자료제출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인수인"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 (5) 우선주인수계약서 제3조 2항, 제4조, 제5조, 제19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내지 제31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는 경우
 - (6)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7) 회사"의 주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 (8) 청산, 파산, 회생절차 또는 부설정후기업으로의 인격 등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 (9) "회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년[20]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신주인수권
- ① 본 계약에 의한 우선주는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가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가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인수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본 계약을 준용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2019 년 02 월 26 일 설정

2019 년 03 월 04 일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1. 우선주의 내용

①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질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3조 내지 제18조를 따른다.

② 상기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은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허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단,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6조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 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②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에 손해를 미치게 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의 별도로 그 안전에 대하여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종주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배당금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전환상환우선

1340419152311050124100921006211000B0T6M10HB1JCL1S1 3 발행일:2019/04/15

발급확인번호 0166-ALRF-VZJC

- 8/12 -

PATENT

REEL: 059914 FRAME: 0528

등기번호

600016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게 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주식배당의 경우 "인수인"의 요청에 따라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과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을 배당한다. 위 사항과 관련, "회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또는 "인수인"이 인정하는 해외시장에 상장(M&A 등을 통한 우회상장을 포함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 시장에서의 상장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하 통칭하여 "기업공개"라 한다)함에 있어, "회사"의 배당금 지급사실이 등 "회사"의 "기업공개" 절차상 최초 공모가격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궁극적으로 "인수인"의 이익에 반한다고 "인수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4. 청산(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회사"가 청산될 때 "인수인"은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1조 제2항의 인수금액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5. 전환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은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전환비용

(1) 원칙적으로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단, 전환비용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2) "회사"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인"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거나 (i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v)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1주당 취득가격(아래 조정사유에 따라 전환비용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격 포함)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이하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다.

(3) 위(2)에 의한 동의여부를 불분하고 "회사"가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인수인"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권면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비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다만, "회사"의 기승인 또는 거발행된 전환사채, 우리사주조합에 의한 신주인수, 또는 "회사"의 정관이 정한 한도 내에서 부여 예정인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인수인"의 1주당 취득가격) / ("인수인"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4) "회사"가 기업공개 또는 M&A를 함에 있어, "회사" 기업공개 공모단가 또는 M&A 인수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격을 기업공개 공모단가 또는 인수단가의 70%로 조정한다.

(5) "인수인"의 일(1)주당 취득가격은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1조 제2항의 인수금액 총액) /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총수)로 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용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발급권번호 0166-ALRF-XZJC

13404191523110501241009210062110003016M101B1J0L1S1 3 발행일:2019/04/15

- 9/12 -

PATENT

REEL: 059914 FRAME: 0529

등기번호

600016

조정된다.

(7)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도록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8) "회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알츠하이머 USFDA 임상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전환가격을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1주당 취득가격(위의 조정사유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격 포함)의 80%로 조정한다.

3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권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6. 상환에 관한 사항

① "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 따라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자금을 "인수인"이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을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상환기간: "인수인"은 "회사"가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업공개"되지 못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일정 및 비율에 따라,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최초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100%

(2)상환방법: "인수인"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상환

(3)주당 상환가액: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일(1)주당 취득가격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연복리[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② "인수인"은 제①항에서 정한 상환기간 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의 상환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인수인"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인"에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일(1)주당 취득가격과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연복리[8]%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주당 상환가액으로 현금상환 하되,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1)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우선주인수계약서 제10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우선주인수계약서 제1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는 경우

(4) "회사"가 우선주인수계약서 제21조에 의한 보고의무, 협의절차, 동의절차 준수 의무 및 계우선주인수계약서 제22조에 의한 자료제출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인수인"의 투자사업결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

IS404191523110501241009210062110060016M101B1J0L1S1 3 발행일:2019/04/15

발급확인증번호 0166-ALRF-XZJC

- 10/12 -

PATENT

REEL: 059914 FRAME: 0530

등기번호

600016

제시된 경우

(5) 우선주 인수계약서 제3조2항, 제4조, 제5조, 제19조 내지 제20조, 제29조 내지 제34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는 경우

(6)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7) "회사"의 주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정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8) 청산, 파산, 회생절차 또는 부실정후기업으로의 인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9) "회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년[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신주인수권

① 본 계약에 의한 우선주는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인수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본 계약을 준용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2019년 03월 16일 설정 2019년 03월 27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3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 및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기관)

13404191523110501241009210062110008076H01B1J0E181 3 발행일: 2019/04/15

발급확인번호 0166-AERF-XZJC

- 11/12 -

PATENT

REEL: 059914 FRAME: 0531

등기번호

600016

(3) 대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19 년 02 월 13 일 변경 2019 년 02 월 25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한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용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회사설립연월일

2016 년 03 월 14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6 년 03 월 14 일 등기

수수료 1,000원 영수함

--- 이 하 이 배 ---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불립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직접·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19년 04월 15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전리로 출력 가능합니다.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3404191523110501241000210002110008076M101B110L1S1 3 발행일: 2019/04/15

발급확인번호 0166-ALRF-XZJC

- 12/12 -

PATENT

RECORDED: 03/18/2022

REEL: 059914 FRAME: 0532